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1, 팩스 044-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10호

환경보건센터 지정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센터 지정>

지정분야	센터명	주관기관	유효기간
환경보건	서경대학교	서경대학교	2020.8.17. ~
연구정보	환경보건센터	산학협력단	2025.8.16.

●환경부공고제2020-720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63, '19.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플라스틱의 재활용율을 높이고 발생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먹는샘물 용기에 부착하던 표시사항(라벨)을 병마개에 부착을 허용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라벨지를 용기 또는 병마개에 선택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

나. 먹는샘물 표시사항은 주표시면과 별도구획란에 구분하여 표시하되, 별도구획란 표시사항 일부를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별도구획란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전자우편/팩스 : lkylky@korea.kr/ 044-201-7130

라.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201-7118,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08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소 방 청 장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고, 유수검지장치 시험 장치의 설치 위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6조제1항제14호)

나. 유수검지장치실 출입문의 크기를 개구부의 크기로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4호)

다. 유수검지장치의 시험 장치 설치 기준을 명확히 정함(안 제8조제12항제1호, 제2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09호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소 방 청 장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수동방식인 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